

제 호				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				
취업지원 대상자	성 명		생 존 장병과의 관계	본인
	생년월일		전 화 번 호	
	주 소			
용도		채용시험 가점	가점비율	5%
제 출 처				
위 사람은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직인				
※ 유의사항				
1.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				
2.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	
우	주 소	전화	전송	
담당부서명:	과장:	주무:	담당자:	전자우편 주소: